목 차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1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배부회계관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걢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0년 03월 3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에스마크

대 표 이 사 : 신희주 (인)

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농공 2길 21(가주동)

(전 화) 02-757-7191

내부회계관리자: 부사장 김대선

(전 화) 02-757-7191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3,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규정 (이하"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의거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주요 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회사자산의 보호, 부정과 오류의 사전예방과 적시발견,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기록 및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시의 적절한 작성을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 2.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 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3.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제 2 장 내부회계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5조(회계업무의 처리)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 측정, 분류, 보고 등 회계처리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1. 회계처리방침

자산, 부채의 평가기준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의 방침과 절차를 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사용되는 회계처리방법과 절차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만일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 역시 같은 판단을 한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의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2. 회계방침의 변경

자산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회계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회계정보의 보고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는 회계정보를 보고할 때에는 그 성격에 따라 보고서의 종류를 구분하고, 보고 의무자, 보고를 받는 자, 보고기한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형식이나 보고서 양식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회계거래의 기록방법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결의서의 작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담당 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서면에는 공시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야 하며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별표1과 같다.

제6조(회계업무처리의 점검)

- ①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 2. 결의서, 회계 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 받은 사실의 유무
- ②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회계기록이 재난이나 도난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회사 내의컴퓨터와 장소를 달리하는 컴퓨터에 동시에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②회계기록의 담당자가 회계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에는 동시에 같은 내용을 내부회계관 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회계기록의 담당자가 종전의 회계기록을 변경 할 경우에 내부회계 관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회계기록의 담당자는 회계기록이 수록된 전자문서에 암호를 부여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담당자가 회계기록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고하거나, 기록을 복사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8조(운영책임자)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적용되도록 관련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 ①대표이사는 회사의 상근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회계를 관리 할 능력이 있는 자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정기주주총회직후 지명하여 다음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간에 교체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②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경과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하고 같은 시기에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내부회계관리자는 본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회사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임원 및 직원의 업무는 별표 1와 같다.

제11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 ①대표이사 기타 임, 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당해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의해 보고 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게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제1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 3.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징계 등) 규정을 위반한 임,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신고자등"이라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 1.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제15조(규정의 제, 개정 및 세부사항)

- ①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이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 ②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 이사가 정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의 개정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 등의 개정 또는 단순한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개정의 경우 이사회의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_	-	-	_

(3) 관리 · 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책임자 직 책		담당업무	담당업무	
또는 부서	성명	l명 대부회계관리자 대부회계관리자		기타	전화번호
감사(위원회)	김원식	감사	_	_	02-757-9171
이사회	신희주	대표이사	_	_	02-757-9171
회계처리부서	김대선	부사장	_	_	02-757-9171
전산운영부서	홍원의	과장	_	_	02-757-9171
자금운영부서	배성수	부장	_	_	02-757-9171
기타관련부서	_	_	_	_	02-757-9171

(4) 내부회계관리 • 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내부회계담당 인	내부회계담당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인력의 평균 경력월수 (※)	
감사(위원회)	1	_	_	_	_	
이사회	3	_	_	_	_	
회계처리부서	2	4	_	_	152	
전산운영부서	1	1	_	_	120	
자금운영부서	1	2	_	_	152	
기타관련부서	_	_	_	_	_	

A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

내부회계담당인력의 '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성명 전화 회계담당자 번호 등록여부	히게다다지		경력	교육실적	
(직위)	성명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 관리자	김대선	02-757-9171	-	_	-	_	_
회계담당임원	배성수	02-757-9171	_	_	_	_	_
회계담당직원	이형철	02-757-9171	_	_	ı	_	_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고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		
		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		
		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_
		위해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	이사회 및	에 관한 법률」제8조4항에
2020-02-14	신희주	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위원	감사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대
		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		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
		로 사용하였습니다.		가 실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		
		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		
		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		
		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		
		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		
		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		
		다.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중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 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화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 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 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 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위 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제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 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습니다.

2020년 2 월 14 일

대표이사:신희주

내부회계관리자 : 김 대 선 (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

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고
		본 감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대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부 회계 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있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본감사에게 제출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2020.02.14	감사 김원식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	
		였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평가기준	
		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본 감사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부 회계 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있 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본감사에게 제출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 태평가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 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 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20.02.14.

주식회사 에스마크

감사 김 원 성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삼일회계법인)

구 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고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에스마크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7112011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임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			
	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에스마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			
	 가결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판단됩나다" 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내부회계제도가 전반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하고 적			
	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외부감사에 관한	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법률」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	-	-	-
제8조 제6항의	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			
종합의견	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			
	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상기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에스마크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의 내용이 내			
	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의			
	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수임한 검토업무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보			
	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			
	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부회계	_			
제도관련 의견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에스마크 대표이사 귀하

2020년 03월 20일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에스마크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임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에스마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내부회계제도가 전반적으로 구축,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상기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이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에스마크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의 내용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수임한 검토업무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 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영 식